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오봉수 의원(찬성자 13명)

나. 의안번호 : 제 1083호

다. 제출일자 : 2016. 4. 6.

라. 회부일자 : 2016. 4. 11.

## 2. 제안이유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하는 한편,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연임제한을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나. 분과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사문화된 분과위원회 지원 조직인 청계천추진반을 폐지함.(안 제 14조제3항 및 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원안참조
-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기하는 한편,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체위원회 : 총29명 (공동위원장 3인 포함, 당연직 5명, 위촉직 24명)

※ 당연직(5명) :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문화본부장

[그림 1] 청계천시민위원회 조직도

## ■ 주요 조문별 검토

### 가. 연임제한 폐지(안 제12조제5항)

- 안 제12조제5항은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1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표 1] 참조)

[표 1] 안 제12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⑤ ---- -----, -----,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 -----.

- 현행 연임제한 규정에 의거 제4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 24명 중 14명 전원이 2016.3.22일자로 임기만료 됨에 따라 자동 해촉된 상태로, 위원 절반 이상을 새로이 위촉해야 하는 상황임.([표 2] 참조)

[표 2] 제4기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
신규 위촉 위원	10명	5명
1회 연임 위원	14명	
계	24명	5명

※ 제4기 위원회 임기: 2014.3.23. ~ 2016.3.22.(2년)

- 서울시는 이처럼 위원의 상당수가 중도에 교체될 경우, 청계천 개선·보완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청계천 2050 마스터 플랜’ 사업에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본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부 유사 시민위원회도 대부분 연임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표 3] 타 유사 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위원회	운영현황	비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임기2년 연임가능	자문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임기1년 연임가능	심의·자문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임기2년 연임가능	심의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연임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위원에 대한 연임 횟수는 전적 시장의 권한과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것이며,
  - 이는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위원의 연임과 해촉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다만, 연임제한 폐지시 위원 교체율이 다소 떨어져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제한될 소지와 연임 권한을 가진 시장의 눈치를 볼 경우 소신 있는 의견 제시가 어려울 수도 있음으로,
 

조례 개정시 특정 위원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기타 정비사항(안 제14조제3항)

- 안 제14조제3항은 현행 분과위원회(생태·환경, 역사·문화, 도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은 분과위원회 운영을 각 분과와 관련이 많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관련이 많은 부서’의 의미가 모호하고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시장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표 4] 참조)

[표 4] 안 제14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분과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u>같이 3개 분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각 분과와 관련이 많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u> 1. 생태·환경 분과위원회 2. 역사·문화 분과위원회 3. 도시·제도 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③ ----- ----- <u>같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4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계천(T/F)추진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표 5] 참조)
- 이는, 2012.9.28일 본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실제로 청계천추진

반이 조직된 바가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지만 의무사항인 청계천(T/F)추진반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조례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의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례 위반의 여지를 남기거나 조례가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5] 안 제14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p><u>제14조(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물관리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소속부서의 과장 및 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계천(T/F팀)추진반을 운영한다.</u></p>	<p>&lt;삭제&gt;</p>